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중 회사 건물 내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관리지배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질의와 같이 퇴근중인 근로자가 사업장 내의 계단에서 넘어져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비록 재해가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 내에서의 재해로 보아야 하며, 사업장 내에서의 퇴근행위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규정의 의한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바, 근로자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와 퇴근시간과 사고시간과의 연속성 유무, 퇴근경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중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787-752-3)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저는 동생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가해자측과 합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사기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A 형법 제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다수를 묻지 않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0. 12. 10. 84도2380).

그리고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

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악한 행위, 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를 해할 만한 사실이면 되지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신용훼손죄가 성립되므로 제외되며,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주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이 요구되고 또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모욕적인 추상적 가치판단은 모욕죄를 구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기꾼' 등의 말은 가치판단인 동시에 사실의 주장이 될 수도 있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단순한 '도둑놈, 사기꾼' 등의 모욕적인 말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의 수가 다수였다면 명예훼손죄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박문우 변호사 (031-874-1682)

한·방·상·식

의정부한방병원 한방5과 병원장 김원찬



감기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심해짐에 따라 감기로 한방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기라 하면 급성 상기도의 감염증을 말하며 대부분 다른 질병과의 구분이 비교적 용이하다. 우리들이 너무 흔하고 자주 보기 때문에 TV나 대중매체의 광고를 보고서 스스로 판단하여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경

우가 많은데 때로는 이로 인해 감기를 더욱 심하게 만든 후에야 병원을 찾아 오거나 감기와 유사증상이 나타나는 다른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감기와만 계속해서 먹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환자도 몇 배 고생할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우리도 더 힘들게 한다. 만일 밖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오한, 발열, 가슴이 답답함, 소화장애, 심한피로, 심한두통, 황달 등이 온

다면 전문의를 찾아 보기를 권유하며 특히, 유아나 고령자, 허약자 등에 있어서는 2차적인 감염증, 특히 폐렴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만일 만성 폐질환이나 심부전환자의 경우 감기로 인해 갑자기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방의사에 의한 감기의 치료는 상당히 자세히 세분화되어 설명되어 있고, 병의 기간과 진행정도 및 증상에 따른 치료에 중점을 둔다.

그 원인을 크게 풍(風)과 한(寒)으로 많이 보며 기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사기(邪氣)가 인체 내부로 들어가 속발증을 야기한다. 감기의 치료는 이와 더불어 충분한 안정과 휴식 및 충분한 영양공급 또한 중요하다.

☞의정부한방병원 (031-820-7200) www.ujhbang.co.kr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임신 중 성생활은?

A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5주입니다. 임신기간 중 성관계를 하면 유산이 될 수도 있고, 태아에게도 나쁘는데 임신 중 성관계가 태어나 산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A 임신은 아내의 몸과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을 줍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명랑하던 성격이던 사람도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임신 초기와 말기에 흔히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옵니다. 임신을 하면 아내는 성욕이 감퇴하게 됩니다. 또한 태아에게 이상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는 더욱 소극적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무리가 가지 않는 성관계라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신 후 임신의 경과가 순조롭다면 성관계를 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성관계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기를 가졌다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평소와 다르지 않습

니다. 특히 임신초기엔 몸매의 변화가 없어 더욱 실감하지 못하고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이전과 똑같은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성충동이 생겼더라도 아이를 생각해서 자제하거나 자위행위 등으로 욕구를 해소 해봄이 어떨까요?

아내는 임신의 불안감도 있는데 거기다 남편의 바람까지 신경을 쓴다면 올바른 태교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임신기간 중 아내의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는 온 몸바로 태아의 성장에 지장을 주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아내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아이의 안정을 위해 남편들이 절도 있는 생활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 포천의료원 임상병리과 과장 김동렬



나도 무릎이 아픈데 혹시 관절염 아닌가요? - ①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관절염 환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이 전투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호소 또한 그렇다.

단순히 뼈마디가 묵직한 느낌에서부터 '일새에 이는 바람'에 조차도 잠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까지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절질환과 '적(敵)'이 되어 '백전백승'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관절염은 앞으로의 남은 생애 동안을 함께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른 관절을 '적'으로만 간주하고 싸운다면 그야말로 남은 삶 자체

가 전쟁터가 될 것이고 나 또한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기에 말이다.

이제 앞으로 내가 다독거리며 살아 가야 할 관절염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은 개별적인 질환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개념을 강조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아무리 같은 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타나는 증상과 이에 따른 치료 방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결과로 보기에 구별하기 힘든 일관성 생동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은 각

기 다른 취향과 개성이 있듯이, 같은 병명을 가진 환자라 할지라도 그 양상은 크게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치료법이 누구에나 동일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진료를 찾는 환자들 중 이웃 분들과 같은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사이 좋게 약을 나누어 드시는 경우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절대 조금만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다.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절 질환들은 하루아침 사이에 생기는 그런 병들이 아니기에 치료의 경과 또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 감기처럼 단시간에 승부할 수 있는 병이야 몇 일간 앓음으로 저절로 낫기도 하지만,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관절염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친구'를 쉽게 포기하는 일이란 자신을 위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기에 말이다.

☞포천의료원 (031-539-9114)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저는 포천 가신면에 가구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부지가 여유가 있어 저와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동생에게 공장 일부를 임대해 주려고 합니다. 임대료를 얼마를 받아야 세무상 문제가 없었는지요?

A 세법에는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있습니다.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규정에 의하여 귀하는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정상적인 가격(시가) 보다 낮게 임대할 경우 이를 부인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격을 적용하여 공장 시가를 산정하고 그 시가의 50% 상당하는 금액에서 전세금과 보증금을 차감하고 여기에 정예금이자율(현재 3.6%)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로 받으면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송관수 (02-404-9944)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참된 일꾼이 되고져 어렵게 출마를 결심하였으나 미래에 더 큰 뜻을 펴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지역 여러분의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조모상에 조의를 표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천시 바둑협회 회장 / 오리랜드 대표 유왕현 拜上

유왕현이 걸어온 길

- ▶ 광릉숲 문화의 거리를 가꾸는 사람들 회장
- ▶ 경기도 사이클연맹 부회장
- ▶ 포천시 법원조정위원
- ▶ 포천시 국제교류위원
- ▶ 포천시 육상연맹 고문
- ▶ 광릉숲 보전협의회 포천시 주민대표
- ▶ 포천시 로타리 클럽 회원

